# 이해상충 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정책의 주요내용

칸서스자산운용㈜(이하 '회사')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5 조, 동법 시행령 제 50 조,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사의 정보교류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시합니다.

## 1.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

1.1.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

① 투자자가 보유한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제 2 조제 4 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

②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

③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

④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 32 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, 제 33 조의 2 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

⑤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은 정보

1.2. 집합투자재산,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

① 부동산(지상권・지역권・전세권・임차권・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) 및 특별자산(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)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

② 판매회사에 제공하는 경우로서 5 영업일이 경과한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또는 내부통제기준 제 61 조 내지 제 62 조에 따라 계열회사에 제공되는 정보

③ 투자일임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고객으로부터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그 동의를 받은 범위 내의 정보

④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은 정보

## 2. 정보교류 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

① 고유재산운용

② 집합투자업 ·투자일임업·투자자문업

③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업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정보의 종류

④ 기타 회사에서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

## 3.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

①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거래주의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상시 감시하여야 하며, 회사 및 임직원과 고객 간, 회사와 임직원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1. 거래주의 상품에 대한 이행상충 소지가 있는 부분 또는 임직원의 범위 지정 및 감시

2. 거래주의 상품 매매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를 통한 이해상충 여부 감시

③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회사의 계산에 의한 매매 및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등이 제한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제3항에 따른 매매제한 대상 임직원 범위 등을 정하여 거래제한상품 목록을 통지하거나 이를 조회하도록 할 수 있다.

## 4.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유형 및 대응방안

①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(이하 "이해관계인"이라 한다)과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법 제 84조(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) 등 관련 법령 및 관련 내규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

② 회사는 거래유형에 따라 거래 단념, 고객에 대한 해당 사실의 고지, 회사 및 임직원의 해당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 이해상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## 5. 정보차단관리 정책 및 관리 절차

5.1. 정보교류차단의 일반원칙

①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 외의 자에게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임직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하여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.

③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해당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④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직무와 관계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지체없이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

⑤ 제4항에 따른 임직원은 습득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⑥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은 제2항 내지 제5항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.

5.2. 정보교류차단 관리 절차

① 회사는 영위하는 업무의 특성 및 규모,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제3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정보차단벽을 설치. 운영하여야 한다.

1. 사무 공간의 분리

2.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 등 전산적 분리

3.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임직 원의 회의. 통신에 대한 상시적 기록 유지 또는 제한

4. 기타 정보교류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유·무형의 정보차단장치의 설치·운영

5.3. 예외적 교류의 방법

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, 정보교류차단 대상부문간 또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교류를 허용할 수 있다.

1.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
2. 해당 부문별 책임자 및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사전 승인(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동 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속적·반복적인 교류의 경우 포괄적 승인을 포함한다)을 받을 것
3. 제공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
4.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

이용하 지 아니할 것

5. 본 조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해당 정보 교류차 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할 것